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개선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보고의무 신설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8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개선	3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보고의무 신설	6

I .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14087호】

1. 발 의 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0.
3. 회부연월일 : 2025. 11.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 해체·제거 공사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작업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 수립 단계의 전문적 심의 체계와 시공 단계의 엄정한 감리가 함께 작동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하고, 감리업무 역시 석면 잔재물 여부 확인 및 행정기관 보고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족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석면의 설치·관리·해체·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사전 심의 - 현장 관리 - 사후 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조의4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절차 개선

개정안은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석면 관련 전문적·기술적 사항이 실질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은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며, 그 밖에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환경보건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석면의 설치·관리·해체·제거 및 노후 석면 건축물 관리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한다.

현행법은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수립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¹⁾. 그리고, 「동 법 시행령」은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핵심 사항에 관하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또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는 환경보건위원회³⁾ 아래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석면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도록 하고 있음⁴⁾.

- 1) **법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동 법 시행령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환경보건법**」 제9조(**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請願)의 처리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4)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 ⑦ (이하 생략)

결과적으로 지금 제도는 법률에는 ‘위원회 심의’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시행령에서 다른 시행령의 위원회를 인용하여 심의하도록 연결해 둔 구조임. 이에 따라 어느 위원회가 무엇을 어떤 절차로 심의하는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런 점에서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석면 분야의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할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석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개정 취지는 일정 부문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심의 주체(환경보건위원회)와 전문기술 검토기구(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법률에 신설할 경우, 법률의 집행·적용 또는 해석 과정에서 위원회 간 관계 및 기능 중복 여부를 둘러싼 여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①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현행법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② ‘환경보건위원회’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하며, ③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 전반을 다루는 기구이므로 석면관리 기본계획까지 직접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현행 시행령에서 석면안전관리위원회가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위원회를 법률로 다시 만들 경우 중복과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보고의무 신설

개정안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업무 수행결과와 석면 잔재물 발생 여부 확인 등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제6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석면 잔재물 발생 여부, 제거계획 이행 상태 및 현장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u>

현행	개정안
	<u>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 <u>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요구 및 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정기보고와 별도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u>

현행법 제30조의4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범위와 함께, 기준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자에게 시정·중지 등을 요청하도록 하고(제2항),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한 뒤(제3항), 보고를 받은 기관장이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현장 통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⁵⁾.

5) 동 법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

개정안은 위와 같은 현행 체계에 더하여, 감리인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석면 잔재물 발생 여부, 제거계획 이행 상태, 현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요구·보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보고와 별도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다음 같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우선 석면 잔재물의 처리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감리인의 업무범위 및 제재·보고·조치 체계를 확대·강화하는 유사한 취지의 개정법률(제21369호)이 2026년 2월 29일 공포되어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음⁶⁾.

[시행예정 법률 조문대비표]

현행	2027.2.20. 시행예정 법률 (법률 제21369호)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u> <u>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u>

- 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구체적으로는 감리인에게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작업계획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감리인이 시정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됨.

⑤ (생략)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u>판단하면</u>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다음	<u>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u> 2. 제30조의4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제124조제1항에----- ----- ----- 3. ~ 5. (현행과 같음) 6. <u>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u>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 ----- -----판단하거나 석면해체·
---	--

⑤ (생 략)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2회-----

6. (현행과 같음)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석

	<u>면해체작업감리인이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의 현장 상주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지체나 그 밖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u>
(이하 생략)	

또한, 정기보고 및 즉시 보고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30조의 4제3항에 이미 ‘조치요청 후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가 존재하므로 개정안의 ‘즉시보고’는 현행 보고의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고, 석면해체·제거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정기 보고 의무를 추가하더라도 실익이 제한적인 반면, 작업현장의 행정적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감리인의 정기·즉시보고와 유사한 내용이 이미 현행법 제30조의4(즉시보고)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제4호(감리완료 보고) 등에 따라 감리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법률상 의무 신설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42